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1976)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 번호 2018-55

1. 메이슨 캐피탈 엘.피. (MASON CAPITAL L.P.)
2.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 (MASON MANAGEMENT LLC)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절차 명령 제 1 호

중재판정부

Professor Dr. Klaus Sachs (의장중재인)

The Rt. Hon. Dame Elizabeth Gloster

Professor Pierre Mayer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19 년 2 월 25 일

2018 년 12 월 22 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절차 명령 제 1 호의 초안을 배포한바,

2019 년 2 월 19 일 당사자들의 대표 및 대리인, 중재판정부 중재인 전원, 상설중재재판소가 입회하여 제 1 차 절차회의가 유선으로 개최된 바,

동 절차 명령은 절차 사안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사항을 기록하고, 미 합의된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 및 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을 명시한다.

중재판정부는 다음 사항을 명한다:

1. 중재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중재지는 싱가포르로 정한다.

2. 절차일정표

2.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절차일정표를 확정하여 차후 별도의 절차 명령에 이를 명시한다.

2.2.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기한은 중재지 기준 최종 기일의 자정으로 정한다.

3. 제출

3.1. 모든 서면입장의 제출 최종 기일에 당해 당사자는 전자우편으로 모든 증인진술서 및 전문가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서면입장과 함께 중재판정부, 상설중재재판소 및 상대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송부한다. (단, 기타 근거자료 및 법적 권한은 송부대상에서 제외한다.)

3.2. 증인진술서 및 전문가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포함한 모든 서면입장은 문서의 서두에 하이퍼링크가 첨부된 목차를 포함하여 전문 문자 검색이 가능한 어도비 휴대용 문서형식 (“PDF”)의 문서파일로 제출한다.

3.3. 전자우편으로 서면입장을 제출한 이후 3 영업일 이내에 당사자는 서면입장 및 모든 부속 문서(법적 권한 제외)의 인쇄 사본을 중재판정부, 상설중재재판소 및 상대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운반원을 통해 발송한다.

3.3.1. Professor Sachs 의장중재인, 상설중재재판소 및 상대 당사자의 대리인에게는 서면입장 및 부속 문서를 A5 용지에 양면 인쇄하여 별도의 자립형 링 바인더에 제본하지 아니한 형태로 발송한다.

3.3.2. Dame Elizabeth 중재인에게는 서면입장을 A4 용지에 단면 인쇄하여 별도의 자립형 링 바인더에 제본하지 아니한 형태로, 부속 문서는 A4 용지에 양면 인쇄하여 별도의 자립형 링 바인더에 제본하지 아니한 형태로 발송한다.

3.3.3. Professor Mayer 중재인에게는 서면입장을 A4 용지에 양면 인쇄하여 별도의 자립형 링 바인더에 제본하지 아니한 형태로, 부속 문서는 A5 용지에 양면 인쇄하여 별도의 자립형 링 바인더에 제본하지 아니한 형태로 발송한다.

3.4. 인쇄 사본은 각 문서의 해당 증거물 번호, 날짜, 제목, 작성인 및 수령인을 명시한 목차를 문서의 서두에 포함하여, 시기 순 또는 기타 적절한 순서로 체계화하고, 증거물 당 별도의 색인을 첨부하여 정리한다.

3.5. 한국어로 번역된 문서의 전자 및 인쇄 사본은 피청구국 및 상설중재재판소로 송부하나 청구인 및 중재판정부로는 송부하지 아니한다.

3.6. 전자우편으로 서면입장을 제출한 이후 3 영업일 이내에, 문서(증거물 및 법적 권한 포함)는 검색이 가능한 PDF 파일형식으로 (또는 하단의 제 5.9 항에 따라 원본형식의 제출을 요하는 문서의 경우 문서의 원본형식으로), 암호화된 USB 저장장치 또는 암호화된 파일전송 서비스를 통해 제출한다.

3.7. 동시 제출하는 문서의 경우, 각 당사자는 모든 전자 및 인쇄 사본을 오직 상설중재재판소에만 제출하며, 상설중재재판소는 당사자들의 문서를 모두 수령하는 즉시 그 사본을 중재판정부 및 각 당사자의 상대 대리인에게 배포한다.

3.8. 제출 기한의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동 상황을 인지한 후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가능한 조속히 제출한 경우에 한해, 중재판정부가 그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하거나 당사자들이 이에 합의한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 동 기한 연장은 기 확정된 심리 또는 기타 회의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문서개시

4.1.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확정 예정인 절차일정표에 따라 상대 당사자에게 문서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동 요청은 서면으로 하며, 요청하는 문서마다 또는 문서의 분류마다 요청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개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 가능한 기한 내에 요청된 문서를 개시한다.

- 4.2. 당사자의 요청 또는 중재판정부의 명령에 응하여 게시하는 모든 문서는 각 문서별로 고유번호 및 작성 일시를 명시하고, 문자 검색이 가능한 PDF 형식(제 4.5 항에 따라 문서의 원본형식 그대로 게시되어야 하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는 제외)의 전자문서로, 어느 요청에 따라 게시하는지를 명시하는 색인을 첨부하여 요청 당사자에게 전송한다.
- 4.3. 피요청 당사자가 개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적용한다:
 - 4.3.1. 피요청 당사자는 어느 문서 또는 어느 문서분류의 개시에 이의를 제기하는지를 명시하는 답변서를 제출한다. 동 답변서는 각 이의제기에 관한 사유를 제시하고, 요청된 문서 대신 게시하고자 하는 문서가 있을 경우 해당 문서를 명시한다.
 - 4.3.2. 요청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반대 여부를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답변한다.
 - 4.3.3. 당사자들은 개시요청 관련 가능한 최대한의 합의를 추구한다.
 - 4.3.4. 요청 당사자 및 피요청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미해결된 모든 요청을 중재판정부에 공동 제출하여 그 결정을 구한다.
 - 4.3.5.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구하고자 제출된 문서개시요청서와 각 당사자의 이의제기 및 답변은 동 절차 명령에 **부속서 1** (수정 Redfern 일정)로 첨부된 예시에 따라 ‘표’ 형태로 작성한다. 당사자들은 요청, 이의제기 및 답변 교신 시 동 예시를 사용한다.
 - 4.3.6.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모든 적용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이의 목적으로 *국제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규칙(2010)*을 참고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개시를 명령한 문서는 중재판정부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절차일정표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여 게시된다.
 - 4.3.7.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문서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모든 유관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추론을 내릴 수 있다.
- 4.4. 중재판정부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모든 당사자는 문서개시에 관한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동 요청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 4.5. 엑셀스프레드시트는 문서의 원본형식(즉 엑셀 형식)으로 게시한다. 당사자는 특정한 문서의 원본이 다른 형식으로 생성된 경우, 상대 당사자에게 동 문서를 원본의 전자형식 그대로 게시해 줄 것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동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4.6. 중재판정부 또한 자진하여 문서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4.7. 당사자들은 문서개시 단계에서 상기 제 4.3.4 항에 명시된 시점 또는 문서교환 시점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 또는 상설중재재판소를 당사자 간 교신 시 참조수신자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 4.8. 상기 일정에 따라 개시된 문서는 이후 당사자가 동 문서를 서면입장의 증거물로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그 이전까지, 또는 문서 교환 이후 중재판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그 이전까지는 정식 기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증거 및 법적 권한

- 5.1. 중재판정부는 증거에 관한 판단 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의 관련 규정 및 상기 문서개시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국제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규칙(2010)*을 지침으로 참고할 수 있다.
- 5.2. 당사자들은 사실 및 법리 주장 시 의존하고자 하는 모든 증거 및 권한을 서면입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이는 증인진술서, 전문가 보고서, 증거물, 관련 문서 및 기타 모든 형식의 증거를 포함한다.
- 5.3. 답변 및 회신 시, 당사자들은 직전에 제기된 상대 당사자의 서면입장에 대해 답변 또는 반박하기 위한 목적 또는 문서개시를 통해 수령한 증거를 포함한 새로운 증거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의 서면으로 된 증인 증언, 전문가 의견 증언 및 문서, 또는 기타증거만 제출할 수 있다.
- 5.4. 동 명령 제 8.5 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답변 및 회신 제출 이후 중재판정부가 예외적인 상황을 근거로 승인을 허가한 경우 외에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서면입장의 일부로서 제출하지 아니한 어떠한 증거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 당사자에게 이러한 예외를 승인한 경우, 상대 당사자 또한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당사자는 추가자료 또는 답변서 제출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동 문서에 요청을 제기하는 부속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5.5.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각 증거물에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한다. 청구인이 제출하는 각 증거물에는 로마자 “C”로 시작하여 해당하는 숫자로 이어지는 번호를 표시한다 (즉 C-1, C-2, 등). 피청구국이 제출하는 각 증거물에는 로마자 “R”로 시작하여 해당하는 숫자로 이어지는 번호를 표시한다 (즉 R-1, R-2, 등). 당사자들은 전체 중재절차에서 순차적인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5.6. 사실증인의 진술서 또는 전문가 보고서의 경우, 청구인의 증인진술서에는 “CWS-”, 청구인의 전문가 보고서에는 “CER-”, 피청구국의 증인 진술서에는 “RWS-”, 피청구국의 전문가 보고서에는 “RER-” 등 별도의 번호를 적용하고 이어 해당숫자 및 성명을 표시한다 (즉 CWS-1 [Smith]).
- 5.7.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법적 권한에 각각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법적 권한에는 각각 로마자 “CLA”로 시작하여 해당하는 숫자로 이어지는 번호를 표시한다 (즉 CLA-1, CLA-2, 등); 피청구국이 제출한 법적 권한에는 각각 로마자 “RLA”로 시작하여 해당하는 숫자로 이어지는 번호를 표시한다 (즉 RLA-1, RLA-2, 등). 당사자들은 절차가 진행되는 전 과정 동안 순차적인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5.8. 사본 형식으로 제출된 증거 등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증거는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동 자료의 진위 또는 완전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가 어느 문서든 불완전하다고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모두 진본이며 완전한 문서로 간주한다.
- 5.9. 엑셀스프레드시트 및 전문가가 산출한 계산은 원본의 전자형식(즉 PDF 대신 엑셀형식)으로 제출한다.
- 5.10. 중재판정부가 특별히 인쇄 사본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법적 권한은 오직 전자형식으로만 제출한다.

6. 증인

- 6.1. 당사자 또는 당사자 소속 임직원 또는 기타 대표를 포함하여 누구든 증인으로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 6.2. 각 증인별로 서명을 포함한 서면의 증인진술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 6.3. 각 증인진술서는 최소한 아래 사항들을 포함한다:
 - (a) 성명, 생년월일 및 증인의 현 주소
 - (b)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분쟁과 관련한 경우 증인의 직위 및 자격에 관한 기술
 - (c) 진술내용의 사실 확인
 - (d) 증인과 당사자들 및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증인과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재판관) 간 모든 과거 및 현재 관계에 관한 기술
 - (e) 증인의 증언한 사실에 대한 기술 및, 해당하는 경우, 증인이 지득한 내용의 출처, 그리고

(f) 증인의 서명

- 6.4. 각 당사자는 심리 중에 상대 당사자가 제시한 증인 및 전문가에 대한 반대신문을 희망할 경우 절차일정표에 명시된 일시에 따라 관련 통지서를 제출한다.
- 6.5. 구술심리에 앞서, 절차일정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중재판정부 또는 상대 당사자는 당사자가 서면입장과 함께 기 제출한, 증인 또는 전문가의 서면증언에 대하여 신문 및 반대신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심리에서 중재판정부 또는 상대 당사자의 요청 없이 당사자가 그 증인 또는 전문가를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에 승인을 요청한다.
- 6.6. 중재판정부가 증인의 직접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당사자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포기한 경우 이외에는, 관련 심리절차에 대한 각 당사자의 증인 소환 책임은 당해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 6.7. 중재판정부는 자발적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어느 증인이든 소환 가능하다.
- 6.8. 중재판정부 또는 상대 당사자가 증언을 위해 소환한 증인 또는 전문가가 심리에 불출석한 경우, 동 증인 또는 전문가의 증언은 중재판정부가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 증언과 함께 제출된 증거와 더불어 기록에서 누락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증언이 타당성과 중요성을 충족하는 경우 동 증인을 재차 소환할 수 있다. 증인 또는 전문가의 화상전화를 통한 증언가능 여부는 중재판정부가 사전심리 회의 또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기타 적절한 시기에 결정한다.
- 6.9. 각 당사자가 소환한 증인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인별로 당해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재판정부는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상기 비용을 적절히 배분하여 최종 판정에 동 결정을 포함한다.
- 6.10. 모든 심리에서 증인신문은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된다:
 - (a) 의장중재인이 증인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 (b) 증인을 제시하는 당사자는 증거자료 및 증인 진술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그러나 최종 증인 진술서 제출 이후 지득한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15 분 미만의 간단한 직접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
 - (c) 상대 당사자는 이어 직접신문도중 제시되거나 증인 진술서에 기술된 사항에 관해 당해 증인을 반대 신문할 수 있다.
 - (d) 증인을 소환한 당사자는 이어 모든 사항 또는 반대 신문에서 제기된 사항에 관해 증인을 재신문할 수 있다.

(e)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문 이전, 도중 또는 이후 등 어느 시점에서든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 6.11. 증인 신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전체 심리절차에 대한 통제권은 항상 중재판정부에게 귀속된다.
- 6.1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 증인은 동인에 대한 신문에 앞서 주장 청취 및 구두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심리 장소에 출석하거나, 주장 및 기타 증인의 증언에 대해 논하거나, 주장 또는 구두 증언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불가하다. 당해 규정이 당사자의 대표인 사실 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준용되는지에 관한 여부는 중재판정부가 사전심리 회의에서 또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기타 적절한 시점에 결정한다.

7. 전문가

- 7.1. 각 당사자는 1 인 또는 그 이상의 전문가의 증거를 보유하고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 7.2. 전문가 보고서는 당해 보고서가 의존하는 모든 서류 및 정보를 첨부한다. 단,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입장에 동 서류 또는 정보가 기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 때는 해당 증거물의 참조번호 표시로 대체 가능하다.
- 7.3. 증인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들이 30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접신문을 대신하여 결론을 요약 발표하기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전문가 증거에 적용된다. 전문가 증인은 당사자들 또는 중재판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한다.
- 7.4.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제 27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자발적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1 인 또는 그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전문가 선정, 전문가감정료를 포함한 위임사항 및 감정결과에 관하여 당사자들과 협의한다.

8. 심리

- 8.1. 당사자들과 협의 후 중재판정부는 심리 장소, 시간, 일정 및 모든 심리의 기술적, 부수적 사항 전반을 결정한다.
- 8.2. 상설중재재판소는 심리내용의 녹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당사자들에게 녹음 기록을 제공한다.
- 8.3. 상설중재재판소는 LiveNote 또는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심리내용의 실시간 기록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매 심리기일 말에 당사자들에게 해당일의 심리 기록을 (초안 또는 최종안의 형태로) 제공한다.

8.4.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의 제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후, 당해 요청에 대하여 상대 당사자가 관련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진 이후에), 중재판정부가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 중에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다. 중재판정부가 심리 도중에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상대 당사자 또한 이를 반박하고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모든 당사자는 심리 중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및 시연용 증거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자료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되, 이미 기록된 증거를 반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 자료들은 사건 파일 기록에 포함된다. 시연용 증거물을 제시하는 당사자는 이를 심리에서 제시하기 직전일 현지시간 기준 오후 7 시 이전까지 상대 당사자에게 이를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상대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통지 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시연용 증거물은 기록자료 내 어느 부분에서 증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는지 표시해야 한다. 각각의 시연용 증거물에는 일련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CDE-1, 피청구국의 경우 RDE-1).

8.5. 후심 서면 제출의 진행 여부는 심리 종료 시에 안내되며, 동 절차가 예정되는 경우, 서면의 형식과 내용 또한 심리 종료 시에 안내된다. 후심 서면 제출에는 중재판정부가 특별히 요청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9. 투명성

9.1. 상설중재재판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제 11.21 조제 1 항에 명시된 정보 및 문서를, 다음에 따라, 보호정보는 사전 편집하는 조건으로 재판소의 누리집에 게시하여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한다.

9.2. FTA 제 11.21 조제 1 항(c)호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는 문서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 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FTA 제 11.20 조제 4 항, 제 11.20 조제 5 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을 포함하되, 전문가 보고서, 증인진술서, 사실증거물 또는 법적 권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3. FTA 제 11.21 조제 2 항에 따라, 심리는 심리장소의 별도 상영실에서 생방송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며, 상설중재재판소는 분쟁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와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심리 사전에 중재판정부에 이를 알려 그러한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 9.4. 보호정보는 (정부 또는 공공국제기관에 의해 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포함하여) 특별히 정치적으로 또는 특정 기관에게 민감한 사안, 당사자의 제 3 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당사자가 상업적 또는 기술적 비밀유지의 근거로 비공개를 지정하여 공유되지 않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 9.5. FTA 제 11.21 조제 4 항(b)호에 더하여, 상대당사자에게 개시하는 문서가 보호정보를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상대당사자에게 문서를 개시할 때 해당 문서를 명백하게 지정하고, 그 문서 내에 보호정보라고 주장하는 정보의 유형을 지정한다.
- 9.6. FTA 제 11.21 조제 4 항(c)호에 의거,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 (a) 보호정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또는
 - (b) 당사자가 보호정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생산한 문서를 상대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경우,
- 21 일 이내에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편집한 문서를 제출한다. FTA 에 따라, 편집본만 비분쟁 당사자에게 제공되며, 또는 상기한 내용에 따라 대중에 공개한다.
- 9.7. 당사자가 상대당사자의 보호정보 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FTA 제 11.21 조제 4 항(d)호에 따라, 편집본을 수령한 후 21 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FTA 제 11.21 조제 4 항(e)호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여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을 내린다.
- 9.8.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정 또는 명령을 수령한 후 21 일 이내에 동 문서의 어떠한 부분이든 보호정보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상대 당사자가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명령 제 9.6 항에 명시된 절차를 적용한다. 최종판정 및 기타 최종 결정과 관련하여 동 조항을 근거로 내리는 모든 명령에 관하여 중재판정부는 그 권한을 유지한다.
- 9.9. 동 재판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제출된 자료에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GDPR”) 제 4 조제 1 항에서 지정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분쟁당사자 및 정보처리에 관계된 모든 정보수령인은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개인정보가 특히 GDPR 및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개별 시행령 등 준용 가능한 모든 정보보호법규정을 준수하여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문서를 생산하는 당사자는 개인정보의 전송 및 처리 전 과정이 모든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에 준하여 정당하게 처리되도록 하며, 특히 GDPR 제 13 및 14 조에 따른 정보규정 등 기타 적용 가능한 정보 사생활규정을 충족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를 유럽외부지역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동 전송행위는 유럽연합집행기관의 결정에 의해 승인된 표준계약조항에서 정하는 적절한 안전보장조치를 기준으로 이행되어야 함. 당사자들은 GDPR 제 32 조를 준수하여 적절한 수준의 정보보호가 상시 보장되도록 적합한 기술 및 제도조치를 확보해야 한다.

중재지: 싱가포르

(서명)

Professor Dr. Klaus Sachs

(의장중재인)

중재관정부 대표

부속서 1: 문서요청관련 Redfern 일정 예시

문서요청번호	
당해 문서 또는 당해 문서의 범주 (요청당사자)	
타당성 및 중요도-제출관련 참조포함 (요청당사자)	
문서개시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 및 사유 (이의당사자)*	
문서개시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답변 (요청당사자)	
결정 (중재판정부)	